



달구벌신용협동조합

## 플러스정기적금(신한카드연계형) 상품설명서

- 이 상품설명서는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및 신협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
-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이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 1. 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플러스정기적금(신한카드연계형)
- 상품특징 : 온.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립식 예금

### 2. 거래조건

-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등**에 따릅니다.

| 구분        | 내용   |
|-----------|--|
| 가입대상자     | •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(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)  |
| 상품유형      | • 정액적립식 예금   |
| 거래방법 (채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 가입 :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은행 (대면 채널 가입에 한하여 통장 발행)</li> <li>• 해지 :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또는 은행</li> <li>- 비대면 채널 해지시 원리금은 본인 명의의 신한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입금</li> <li>- 비대면 채널별 장애, 전자금융 장애,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청구 해지 가능</li> <li>* 상기 채널 중 당 신협에서 운용하는 채널로만 신규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.</li> </ul> |
| 가입금액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입 가능(1만원 단위로 가입)</li> <li>- 계약기간 6개월 : 월 1만원 이상 60만원 이하</li> <li>- 계약기간 12개월 :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</li> </ul>   |
| 계약기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개월, 12개월</li> <li>※ 당 신협에서 미운용하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</li> </ul>  |
| 이자 지급 방법  | • 만기지급식  |

| 구분  | 내용   |  |   |         |
|---|--|--|---|---------|
| 지급 제한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</li> </ul> |  |   |         |
| 판매 기간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3.03.02. ~ 2023.09.30. (7개월)</li> <li>※ 판매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※ 판매한도 소진 여부는 개별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  |  |   |         |
| 기본이율 (연, 세전)  | • 4.5% (기준일 : 2023.03.02)  |  |   |         |
| 최고이율 (연, 세전)  | • 10.0% (기준일 : 2023.03.02)   |  |   |         |
| 우대이율  | 구분   | 우대구분   | 우대조건  | 우대이율    |
|   | 우대이율 I   | 자동이체 연결  | 이 적금을 개설한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에 연결하여 자동이체를 약정하고, 총 납입 횟수의 2/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한 경우 | 연 0.2%p |
|   |  | 급여이체   | 이 적금의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 전 전월까지 연속 3개월 기간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            | 연 0.1%p |
|   | 우대이율 II  | 신협-신한 제휴 카드 결제계좌 등록  |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을 신규발급한 신한-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0.2%p |
| 신협-신한제휴카드 이용실적  |  | 이 적금 가입일이 속한 월의 전월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신한-신한제휴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발급일이 속한 월부터 3개월 기간 동안 월 총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월이 2회 이상인 경우 | 연 5.0%p   |   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휴카드 이용실적 적용 사례</li> <li>- 상황 : 금융소비자가 '23.04.20.에 동 상품을 가입하고 '23.05.03.에 신한-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한 경우</li> <li>- 충족 사례 : '23.5월에 10만원, '23.6월에 5만원, '23.7월에 20만원을 사용한 경우</li> <li>- 불충족 사례 : '23.5월에 5만원, '23.6월에 10만원, '23.7월에 5만원을 사용한 경우</li> <li>※ 카드 발급일이 속한 월부터 3개월 기간 동안 월 총 사용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월이 1회이므로 우대조건 불충족</li> </ul> |  |  |   |         |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--|
|----|----|

- ☞ 우대이율 II 실적 요건 및 산출 기준 등
- 대상자
    - 신한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자
    -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중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  - 기존에 이용하던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중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  - 기존에 신한카드 회원이었으나 탈퇴한 자 중 탈퇴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새로 신협-신한제휴카드를 발급한 자
  - 결제금액
    - 예금주 본인 명의의 신협-신한제휴카드 사용(다만, 선불카드 충전, 상품권 구매, 무승인 거래,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, 현금서비스, 카드론, 신용대출, 가족카드 이용액, 선불카드 이용액,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 이용액 등 제외)
  - 신협-신한제휴카드 이용금액 확인방법
    - 신한카드사 제공 전용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신한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
  - 결제계좌
    - 신협-신한제휴카드 결제계좌는 전체 신협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대상으로 함
  - 우대조건 주의사항
    - 이 적금 출시일 이전에 발급된 신협-신한제휴카드는 우대조건 적용 불가
    - 신협-신한제휴카드는 이 적금 가입일이 속한 월의 전월 1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우대조건 적용 가능(예시 : 4월 10일에 이 적금 가입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카드를 발급하여야 함)
  - 기타사항
    - 신협-신한제휴카드는 이 적금의 우대조건 충족 확인 시점까지 유지하여야 함

**우대이율**

| 구분          | 상세구분 | 우대조건 | 우대이율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개인별 적용 우대이율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|

※ 우대조건(이율)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당 신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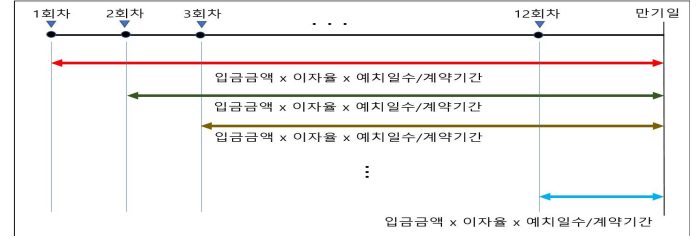
-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

| 경과기간                      | 최저이율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만기 후 1개월 미만               |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× 1/1 |
| 만기 후 1개월 이상 ~ 만기 후 3개월 미만 |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× 1/3 |
| 만기 후 3개월 이상 ~ 만기 후 6개월 미만 | 만기일 당시 신규 기본이율 × 1/6 |
| 만기 후 6개월 이상               |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     |

**만기후이율**

| 구분 | 내용 |
|----|----|
|----|----|

-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- [입금건별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예치일수/계약기간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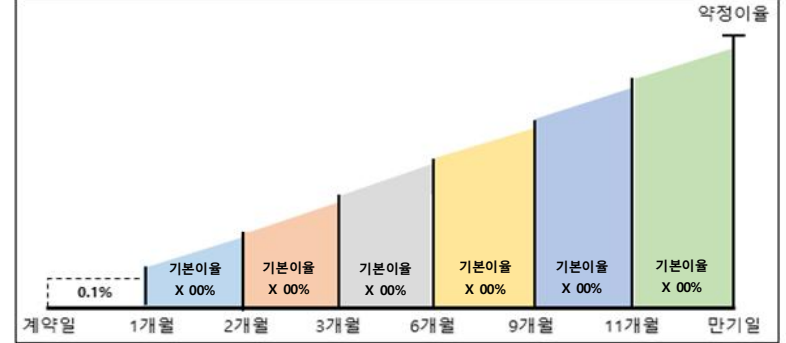
**만기이자 산출근거**

-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**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**

| 예치기간            | 중도해지이율(연 %)               | 최저이율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개월 미만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 0.10% |
| 1개월 이상~2개월 미만  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30% |
| 2개월 이상~3개월 미만  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30% |
| 3개월 이상~6개월 미만  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50% |
| 6개월 이상~9개월 미만  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50% |
| 9개월 이상~11개월 미만 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50% |
| 1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 | 기본이율 × 00% × 중도해지개월수/계약월수 | 0.50% |

※ 단, 연 0.1%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.1% 적용

-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**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**(원미만 절사)



**중도해지이자 계산 방법**

※ 위 그림은 적용율, 중도해지개월수,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.

**예금 해지시 불이익**

-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

| 구 분        | 내 용  |   |
|------------|--|---|
| 세제혜택       | 가능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비과세종합저축 가능</li> <li>※ 장애인,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</li> <li>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li>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</li> </ul> |
| 재예치        | 불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동재예치 불가</li> </ul>  |
| 감액 및 분할 인출 | 불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불가</li> </ul>  |
| 양도 및 담보 제공 | 불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불가</li> </ul>  |
| 연계·제휴 서비스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  |   |
| 계약해지방법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영업점 등 대면 채널 및 비대면 채널</b>을 통해 해지 가능</li> <li>• 계약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, 이 경우 <b>휴일기간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됨</b></li> <li>•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(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)하며,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함</li> <li>• <b>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만기일(휴일 포함)에 자동해지되며</b>, 신규 가입일 당시 지정한 본인 명의 신협 자유입출금식 예금으로 <b>자동 입금됨</b></li> </ul> |   |
| 휴면예금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자 지급을 포함한 <b>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</b></li> <li>※ 예금 가입 시점에 <b>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</b></li> </ul>  |   |
| 예금자 보호     | 해당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 예금은 「신협법」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, 당 신협에 있는 귀하의 <b>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,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</b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위법 계약 해지권

- 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원칙 위반시 **일정 기간 이내**에 금융소비자가 **계약 해지를 요구**할 수 있습니다. 신협은 **10일 이내**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**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**하여야 합니다.

-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,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)**에 서면 등으로 **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**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**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** 가능합니다.

### 4. 유의 사항

-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**고객센터 (1566-6000)** 또는 **신협 홈페이지(www.cu.co.kr)**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**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(국번없이 1332)** 또는 **e-금융민원센터(https://www.fcsc.kr)**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5. 금융 용어 설명

| 용 어  | 내 용   |
|------|---|
| 압류   |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  |
| 가압류  |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   |
| 질권   |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: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 |
| 경과기간 | (해당 기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<br>* 예시 :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  |
| 채널   | 금융소비자가 예금 상품별로 신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을 의미하며, 채널은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 |